

구매 일반조건

1. 정의

- 1.1 "매수인"은 Atotech Korea Co., Ltd.를 의미한다.
- 1.2 "공급자"는 "매수인"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자 및 여타 계약 상대방을 의미한다.
- 1.3 "계약 제품" 또는 "제품"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공급자"가 인도 가능하고 첨부1에 정한 제품 범위를 의미하고 다만, 기존의 제품 범위에 직접 관련된 추가 개발 제품을 포함한다.

2. 적용 범위

- 2.1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하는 인도, 서비스 및 주문은 모두 하기의 구매 일반조건에 의하여만 진행된다. 구매 일반조건은 제품의 인도, 서비스 및 청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공급자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편입된다. 구매 일반조건은 별도로 다시 그 내용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장래 인도, 서비스 및 주문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2 공급자 또는 제3자의 약관 또는 구매 일반조건은 매수인이 각 거래 건에서 이를 별도로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공급자 또는 제3자의 구매 일반조건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써 공급자 또는 제3자의 약관 또는 구매 일반조건을 수용하였다거나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구매 주문 및 주문

- 3.1 계약을 완료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양당사자는 구두로 된 이면 합의는 없음을 확인한다.
- 3.2 매수인은 구매 주문일로부터 십사(14)일 이내에 공급자로부터 주문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지 않으면 여하한 금전 배상 없이 구매 주문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 3.3 구매 주문을 완수하기 위해 특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요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청을 받지 않아도 청약 시에 적절한 역량 증명을 매수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인도 시기, 불이행

- 4.1 합의한 인도 시기 및 기간은 구속력이 있다. 인도 시기 및 기간은 각 경우에 이행 장소에서, 계약에 부합하는 제품을 인도하고 계약에 약정한 서비스를 모두 공급한 경우에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4.2 공급자가 합의한 인도 일자 또는 기간을 어떤 이유로든 충족하지 못한다고 알게 된 경우,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연 사유와 예상 지연 기간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이러한 통지는 제품 배송사고가 발생하거나 제품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3 공급자는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분할 인도를 할 권리가 없다. 분할 인도의 경우, 인도 서류에 분할 인도 발생을 표시하고 인도하지 않고 남은 수량도 표시해야 한다.
 - 4.4 공급자가 인도 및/또는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지연된 매 영업일 또는 남은 부분에 대해 0.3%의 비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인도물품, 서비스 또는 추후 이행을 받아들일 때에 해당 금액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은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5 합의된 인도 기일보다 이른 인도의 경우, 매수인은 공급자 비용 부담으로 선적을 반송할 선택권이 있다. 조기 선적 시에 제품을 반품하지 않은 경우, 합의된 매수인 구내 인도일자까지 공급자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제품을 보관한다. 조기 인도를 승낙한 경우, 구매 대금 지불 기일은 합의한 인도일자에 따라 결정한다.
 - 4.6 매수인은 제품이 매수인의 구내에 인도된 후 칠(7)영업일 내에 제품 품질과 적합성을 검사하고 매수인은 제품 확인과 인수를 한 때에 확인 및 인수 수령증을 발급한다.
- ### 5. 철회 권리
- 5.1 매수인은 매수인의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 고객을 제외하고 제품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그 고객이 매수인과의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급자와의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5.2 제5조 1항에 따른 철회의 경우, 공급자는 불필요하게 된 공급자의 비용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시행한 작업 또는 공급한 제품을 타 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일실 이익, 영업손실, 또는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하지 아니한다.

6. 포장, 운송

6.1 인도할 제품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포장한다. 포장 재료를 계약에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포장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6.2 제품을 매수인 본점 소재지에서 인도하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제품을 발송하면서 발송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3 인도는 포장, 취급, 운송 및 보험에 대한 비용 지급 없이 이루어진다. 공급자는 자체 비용 부담으로 제품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 운송 기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품의 분실 및 훼손에 관한 위험부담은 인도시,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 및 수령 확인증을 제공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6.4 모든 인도 서류에 주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5 인도 일자를 준수하기 위한 긴급 선적에 대한 추가 비용은 공급자가 지불해야 한다.

7. 송장 발행 및 대금지불

7.1 송장은 주문 번호를 표시하여 두 통을 발행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송장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다.

7.2 지불 기일과 기간은 인도 주소로 제품의 완전한 인도/이행과 매수인의 송장 수취 이전에는 시작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재료 시험, 시험 계획, 품질 문서나 기타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한, 매수인의 이들 서류의 수취는 인도 완료의 필요조건이다. 일반적인 모든 지불 기간은 송장을 수취한 날 또는 송장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날을 말한다.

7.3 매수인은 적용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상계 및 지급보류와 불이행에 대한 항변 권리가 있다. 특히 매수인이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는 인도물품이나 이행에 대하여 공급자에 대한 청구 권리를 보유하는 한

매수인은 지불을 유보할 권리가 있다.

7.4 결제 조건과 지급 시기는 매수인이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 합의한다.

7.5 지불을 한 사실이 인도 또는 이행이 계약의 조건대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8. 결함의 경우의 권리, 제한, 예비 부품 및 마모 부품

8.1 결함으로 인한 모든 청구는 법에 의해 더 긴 기간이 규정되지 않는 한, 3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단, 이는 결함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2 매수인은 제품을 수령한지 이(2)주 내에 명백한 결함을, 상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숨은 결함을 알게 된지 이(2)주 내에 숨은 결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제품이 본 계약에 규정한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공급자는 최선을 다하여 즉시,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매수인이 요청한 후 늦어도 칠(7)일 내에, 본 계약의 조건에 적합한 신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8.3 공급자는 최종 인도 후 최소한 십(10)년간 제품용 예비 부품과 마모용 부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다.

8.4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공급할 제품용 예비 부품과 마모용 부품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 중단을 결정한 후 즉시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결정은 최소한 생산을 종료하기 삼(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9. 유치권 포기

공급자의 유치권은 공급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 제품의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해서만 유효하며 공급자는 그 외의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특히, 대금 지급 목적인 제품 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대금 지급 후에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급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10. 제품 품질 및 제조물 책임보험

10.1 공급자는 현행 기술 및 법적 요건에 따라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고,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이를 입증해야 한다.

10.2 공급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제품 리콜 위험을

포함한 제조물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공급자의 보험회사의 해당 보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공급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 10.3 매수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물 책임보험에 근거하여, 아니면 기타 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책임을 야기한 결함에 대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한, 공급자는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매수인을 그 청구로부터 면제시켜야 한다. 매수인이 공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공급자는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공급자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 금액만큼 매수인을 면제시켜야 한다. 전술한 의무는 관련 법령상의 제품 리콜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제품회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경비에도 적용한다.
- 10.4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인도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매수인이 인수한 날부터 매수인에게 이십사(24)개월의 명시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11. 책임

매수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해 행위하거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의에 대한 침해와 같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의무이거나, 중요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공급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지만, 중요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의 의무는 일반손해로 제한한다(일실손해, 영업손실, 특별손해 등 제외). 중요한 계약상 의무는 계약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꼭 완수해야 할 의무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완수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는 의무를 의미한다.

12. 지식재산권, 사용권, 비밀유지

- 12.1 공급자는 계약 및 계약 실행, 특히 인도한 제품의 사용이 제3자의 여하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 및 보장하며, 위반시 책임을 진다.
- 12.2 공급자는 제12조1항에서 언급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3자의 매수인에 대한 청구로부터 매수인을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술한 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
- 12.3 계약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용하게 했던 모든 문서 (예를 들면, 도면, 삽화, 계산, 설명서), 모델 및 도구는 매수인의 자산으로 남는다. 공급자가 계약 목적을 벗어난 목적(예를 들면,

복사, 제3자의 사용 허용)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이 해지된 때에 공급자는 요청에 의해 이 도구, 모델 및 사본을 포함한 문서를 반환해야 한다. 공급자는 전술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보유할 권리 등을 갖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매수인이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했던 모든 지식재산권을 임의로 변형, 수정,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2차적인 산출물을 설계 또는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4 공급자는 무한정한 기간 동안, 합의된 특성대로, 계약에 규정한 용도에 필요한 범위까지, 부수 서류를 포함하여 공급 범위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독점의, 양도 가능한 전세계적 라이선스를 매수인에게 허용한다.
- 12.5 공급자는 매수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신이 공급자라고 공개하거나, 매수인의 구매 주문에 관해서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공급자는 서면에 의해 매수인의 주문을 처리하거나 완수하는 업무를 하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수탁자 등이 계약에 의해 이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비밀유지 의무는 협력 과정에서 취득하는 매수인의 조직, 개발 및 기타 구조에 관한, 그리고/또는 매수인의 구매 주문에 관한 모든 지식에도 적용한다. 이러한 공급자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 12.6 공급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사용하는 사람이 계약 수행을 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만든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청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전술한 권리 허용 및 권리 양도는 인도되는 제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가격으로 보상된다고 간주한다.

13. 당사 구내에서의 작업

계약 완수에 있어서 매수인의 구내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매수인의 유효한 회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4. 행동 규범, 환경보호, 안전

- 14.1 매수인은 아토텍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아토텍 윤리강령에 명시한 윤리 가치 및 원칙을 준수한다. 아토텍 윤리강령은 특히 직원 처우에 관한 법정 규정 준수, 환경 보호 및 산업 안전, 인권 보호, 자유경쟁 원칙의 준수 및 공적이거나 사적인, 아니면 적극적으로거나 수동적인, 여하한 또는 모든 형태의 부패의 거부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14.2 공급자는 자신이 아토텍 윤리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아토텍 윤리강령에 명시한 가치와 원칙에 상응하는 가치와 원칙을 고취한다고 확인한다. 공급자는 또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자신의 공급자들도 이 가치와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진하고 요구한다. 아토텍 윤리강령은 www.atotech.com/our-values에서 확인 가능하다.

14.3 매수인은 공급자가 상기 가치 및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고용하여 서면 통지 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러한 감사에 완전히 협조한다. 매수인은 감사에서 나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감사의 목적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한다.

14.4 공급자가 상기 가치 및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상기 감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또는 위반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특히, 공급자가 아동노동, 차별, 「근로기준법」과 같은 포함한 노동 관련 법률의 위반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환경 보호 및 산업 안전에 관한 법령 및 부패방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상기 가치 및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4.5 공급자는 공급자의 작업장에서 직원의 보건 안전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 사람 및 환경에 대해 공급자의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하여 그리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감소시키기로 약속한다. 공급자는 이 목적으로 가능한 한, ISO 14001를 준수하여 관리 시스템을 제정하고 정교하게 만든다.

14.6 공급자는 또한 공장, 기계, 작업 시설, 제품, 자신이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화학물질 및 생산 재료의 잠재적 위험에 관한 해당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15. 분쟁광물 규제 준수

15.1 공급자는 미국의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하 "법"이라고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분쟁광물 관련 규정인 Section 1502의 시행을 인정한다. 공급자는 콩고 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국가(이하 "DRC 국가들"이라고 한다)에서 조달한 울프라이트, 카시테라이트, 컬럼바이트 탄탈라이트(콜탄), 금 및 그로부터 파생된 금속, 탄탈륨, 주석, 그리고 텅스텐(이하 "분쟁광물"이라고 한다)의 상당한 법률적

그리고 법률외적 위험을 인지한다. 공급자는 매수인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 약속, 동의 및 보증한다.

(i) 매수인에게 인도된 제품은 분쟁광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약 분쟁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법에 따라 DRC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ii) 다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공급망 정책 및 절차를 갖추었다. i) 매수인에게 공급되는 제품에 포함되는 분쟁광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산지 조사, ii) DRC 국가들로부터 공급된 분쟁광물이 그곳의 불법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망 실사, iii) 원산지 조사 및 공급망 실사 절차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와 중재 절차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고객이 합리적으로 상기 내용을 확인, 보증할 것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서면 문서를 발행한다.

15.2 인도된 제품에 다음 각 호의 규제를 받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공급자는 각 호의 규정 및 향후 개정된 내용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공급자의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취할 것이며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진술한다.

- 미국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 캐나다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 유럽연합 –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INECS) /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LINCS)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 중국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Produced or Imported in China (IECSC)
- 대만 – Toxic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TCSCA)
- 일본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Inventory (ENCS)
- 한국 – 한국기존화학물질 (ECL)
- 필리핀 –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 호주 -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공급자는 상기된 규제의 미준수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인도된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상기 규제에 따라 판매 중단되는 경우, 공급자는 당해 화학물질의 판매가 중단되는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5.3 공급자는 본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고객에게 부정확하거나 진실되지 않은 서면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을 변호하고 면책하며, 매수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16. 수출관리 및 세관

- 16.1 공급자는 적용 가능한 국내 및 국제 관세 및 해외 무역법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매수인의 구매 주문 후에 늦어도 이(2)주 내에 서면으로, 그리고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매수인이 수출, 수입 및 재수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해당 규정 및 법을 상세하게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미국 상무부 상업 통제 목록에 따른 수출 통제 분류번호(ECCN)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수출 목록 번호,

- 해외 무역 통제용 현행 상품 분류 및 HS(통일 시스템)코드에 따른 상품 코드,

- 원산지(비 특혜 원산지) 및, 매수인이 요구한 경우, 특혜 원산지에 관한 공급자 신고(유럽 공급자용) 또는 특혜 증명서(비 유럽 공급자용).

- 16.2 공급자는 제15조 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 위반이 공급자의 과실이 아니지 않는 한,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17. 개인정보 보호

- 17.1 계약 협상 또는 체결 과정에서 공급자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

- 17.2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7.3 공급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18. 부패방지 의무 및 내부통제

매수인은 공무원 또는 민간 부문의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 부패와 뇌물 또는 모든 종류의 리베이트 지불을 거부한다.

또한 관련 국제 및 지역 협약에 기술된 원칙을 인정하고, 계약상 활동에 적용 가능한 부패 방지법과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최종 모회사에게 달리 적용 가능한 여타 부패 방지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반 부패 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이 의무는 공무원, 비즈니스파트너 및 그 직원, 가까운 가족 및 다른 파트너에게 불법 지급 또는 기타 불법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무원에게 급행료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 18.1 공급자는 계약 및 계약 대상 사안에 관해서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아는 한 자신을 대신한 어느 누구도 공무원에게, 아니면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해당 지불, 증여, 약속 또는 편의가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지불, 증여를 하거나 제안하거나 편의를 제공 또는 약속하지 않았다고 보증한다.

(i) 행위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ii)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합법적인 직무를 위반하여 어느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iii) 부적절한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iv) 해당 공무원이 어느 정부 또는 공기업의 부서, 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어떤 행위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정부투표로 선출되거나 지명된 임원, 국가/지역/지방정부/ 주의 부처/ 정부나 주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다수의 이익이나 지배권을 소유한 기업 혹은 대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대리인

- *정당의 임원*
- *공직에 출마할 후보*
- *공식적인 국제 조직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대리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등"*

18.2 공급자는 계약 및 계약 대상 사안에 관해서, 공무원 이외에 대상이 합법적인 직무를 위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부당 이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달리 계약상 활동에 적용 가능한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지불, 증여를 하거나 제안하거나 편의를 제공 또는 약속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18.3 매수인에게 이루어진 재무적 정산, 청구 및 보고는 계약 이행에서 행해진 활동 및 거래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반영해야 한다. 공급자는 또한 적절한 내부 통제를 유지하여 계약 이행 중에 이루어진 지불이 정당하게 허가되고 계약을 준수함을 보증해야 한다.

18.4 공급자는 매수인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송장이 접수된 것이 확인된 후에 공급자에게 모든 지불이 이루어 지는 것에 동의한다. 매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모든 지불에 대해 공급자의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금융 기관 공식 계좌로 송금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18.5 공급자는 정확한 장부, 계정, 기록, 송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매수인은 부정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직접 지불하거나 계약자를 대신하여 하도급 업자 등이 지불한 모든 비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 감사 진행 시 협조한다.

18.6 공급자가 이러한 감사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거나 부정부패방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본 협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전 지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8.7 공급자가 제18조의 약속 또는 요건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거나 완수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매수인이 달리 이 계약상으로

또는 법에 의해 가지는 여타 권리 또는 구제 대책을 해치지 아니하고 다음 권리를 가진다.

- (i) 지불을 중지하고/또는 계약상 지불한 선급금 변제를 요구하고/또는,
- (ii) 공급자의 불이행에 대해, 즉시 효력을 가지도록 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다.

19. 배송 체인 보안

19.1 공급자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하청업체를 사용할 수 있다.

19.2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기로 합의한다.

- (i) 매수인의 주문에 의해 생산, 저장, 발송 또는 운송되고, 매수인에게 인도되거나 매수인 인도에 의해 취한 모든 물품은,
 - 안전한 상업 구내 그리고 안전한 적재 및 선적 지역에서 제조, 보관, 준비, 가공 및 처리하였고,
 - 제조, 보관, 준비, 가공, 처리, 적재 및 운송 중에 불법 방해에 대해 보호되었다.
- (ii) 물품을 제조, 보관, 준비, 가공, 작업, 적재 및 운송하기 위해 믿을만한 직원을 고용하였고,
- (iii) 매수인을 대신하여 행위 하는 사업 협력업체도 또한 위에 언급한 공급 체인 보안을 보증하도록 요구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20. 최종 조항

20.1 공급자의 인도물품과 서비스를 인도하는 장소는 각각의 사용 장소로 한다.

20.2 매수인과 공급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법원은 서울에 있는 매수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은 공급자의 소재지를 관할장소로 택일할 권리를 보유한다.

20.3 매수인과 공급자 간에 체결한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하고 해석한다.

20.4 공급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공급자의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잔존 부채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